

IFRS Brief

IFRS Newsletter

Contents

IFRS 뉴스레터 2019년 7 · 8월호	
최근 국제회계기준 정보	1
I. [공개초안] IFRS 17 '보험계약' 개정	
IASB 주요 프로젝트 진행 현황	6
I. 영업권과 손상	
Global 동향	8
I. 2019년 5월, 6월 IASB meeting 기타 논의사항	
II. 2019년 6월 IFRIC meeting 주요내용 요약	
IFRS 실무적용 해설	16
전환사채와 전환상환우선주 발행자의 법인세 효과 비교	

최근 국제회계기준 정보

2019년 5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IASB가 발표한 IFRS 기준서 제 · 개정 사항, 공개초안(Exposure Draft, "ED"), 토론회(Discussion Paper, "DP") 및 해석서 초안(Draft Interpretation)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개초안] IFRS 17 '보험계약' 개정

IASB는 2019년 6월 IFRS 17 '보험계약' 개정사항에 대한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공개 초안에서는 IFRS 17 적용 시 제기되는 우려사항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크게 9가지 사항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IASB는 이번 공개초안에 대해 2019년 9월 25일까지 외부 검토의견을 받는다.

(1) 적용 시기 연장

IASB는 IFRS 17의 의무 적용 시기를 2021년 1월 1일에서 2022년 1월 1일로 1년 연장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IFRS 4에서 허용하는 IFRS 9의 일시적 적용 면제 시기도 2022년 1월 1일로 1년 연장되었다.

(2) 적용 범위 제외 - 보험 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신용카드계약과 대출계약

IFRS 17은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모든 보험계약에 적용한다. 따라서 일부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신용카드계약이나 대출계약 외에는 보험계약을 발행하지 않는 회사들도 IFRS 17을 적용함에 따라 유의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IASB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신용카드계약 중 고객과의 계약 가격을 설정할 때 개별 고객에 대한 보험 위험 평가를 반영하지 않는 신용카드계약을 IFRS 17의 적용 범위 예외사항에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IASB는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대출계약 중 발생한 보험사건에 대한 보상금액이 해당 계약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결제 의무 금액으로 한정되는 대출계약¹⁾ IFRS 17의 적용 범위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계약의 각 포트폴리오 별로 IFRS 17과 IFRS 9 중 적용할 기준서를 선택(취소 불가)할 수 있도록 기준서 개정을 제안하였다.

1 예시 : 대출이자율에 생명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차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대출금 잔액의 상환이 면제되는 특성을 가진 생명보험보장을 포함하는 모기지론

(3)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배분

IFRS 17에서는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보험계약 집합이 인식되기 전까지는 자산으로 인식하고, 보험 계약 집합이 인식된 후에는 이행현금흐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신규 보험계약을 위해 지급하는 수수료(즉, 보험취득 현금흐름)가 최초 보험계약의 프리미엄보다 큰 경우가 있다. 이는 보험회사가 계약의 갱신을 통해서 수수료를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IFRS 17에서는 이러한 수수료를 모두 최초 계약에만 배분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최초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IASB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해당 계약 집합과 계약의 갱신에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계약의 집합에 배분하고, 보험취득 현금흐름이 배분된 보험계약집합이 인식되기 전에는 해당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자산으로 인식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최초 계약에 배분된 현금흐름은 최초 계약이 인식되기 전까지 자산으로 인식되고, 미래에 계약 갱신으로 생기는 계약 집합에 배분된 보험취득 현금흐름은 갱신된 계약 집합이 인식되기 전까지 자산으로 인식된다.)

또한 IASB는 이러한 자산에 대해 매 보고기간 말에 자산 손상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는 경우 회수 가능성을 평가하고, 보고기간 동안의 자산 변동 내역과 자산의 예상 제거 시기를 주석으로 공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개정 전후 비교〉

Cash flows	[개정 전]			[개정 후]		
	Year 1 (최초 계약)	Year 2 (갱신 예상)	Year 3 (갱신 예상)	Year 1 (최초 계약)	Year 2 (갱신 예상)	Year 3 (갱신 예상)
보험 프리미엄	100	100	100	100	100	100
보험금 청구	-	-	-	-	-	-
지급 수수료 배분	(150)	-	-	(50)	(50)	(50)
기대(손실)/수익	(50)	100	100	50	50	50

(4) 투자수익 서비스와 관련된 보험계약마진의 배분

IFRS 17에서는 일반 모형을 적용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을 보험보장이 제공되는 기간에 배분하여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서비스 제공기간이 서로 다른 보험보장 서비스와 투자수익 서비스를 결합한 많은 계약이 존재하나 기존 IFRS 17의 요구사항이 이러한 계약의 회계 처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IASB는 일반모형을 적용하는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계약마진을 보험보장과 투자수익 서비스를 모두 고려한 서비스 제공 기간에 걸쳐 인식하고,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기준서 개정을 제안하였다.

- 보고기간 말에 손익으로 인식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 계약 서비스에 대한 잔여 보험계약마진
- 보험보장에 추가하여 투자수익 서비스에서 창출되는 이익을 결정하는데 기업이 사용한 판단사항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Year 1	Year 2	Year 3	Year 4	Year 5	Year 6	Year 1	Year 2	Year 3	Year 4	Year 5	Year 6
보험보장 제공						보험보장 제공					
투자 요소 제공						투자수익 서비스 제공					
보험계약서비스 손익 인식						보험계약서비스 손익 인식					

한편, IASB는 투자수익 서비스는 계약에 투자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때만 존재한다는 기존의 잠정 결론을 수정하고, 투자수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 계약의 기준을 IFRS 17에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투자수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 계약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i. 투자요소가 있거나, 보험계약자가 금액을 출금할 권리가 있음
- ii. 투자요소나 보험계약자의 출금 권리는 양(+의 투자수익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됨
- iii. 기업은 양의 투자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투자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5) 위험경감선택권의 확장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 계약에 적용되는 변동 수수료 접근법에서는 금융 위험(Financial risk)의 변동에서 생기는 보험계약부채의 변동을 당기손익이 아니라 재무상태표의 보험계약마진(보험계약 부채)에서 조정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금융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기업이 파생상품을 사용한다면, 금융 위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위험경감선택권).

실무적으로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금융 위험 경감을 위해 재보험계약을 사용하는 기업이 있으나 기존 IFRS 17에서 위험경감선택권은 재보험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은 보유한 재보험계약 자산에 대한 금융 위험 변동은 손익으로 인식하고, 발행 보험계약에 대한 금융 위험 변동은 재무상태표의 보험계약마진(보험계약부채)에 인식하는 회계불일치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IASB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금융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기업이 재보험계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위험경감선택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준서 개정을 제안하였다.

(6) 재보험계약에 대한 회계 불일치 제거

IFRS 17에서는 기업이 발행한 보험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 이전하기 위해 재보험 계약을 취득하는 경우, 재보험계약과 원수보험계약을 별도로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한다. 원수보험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 경우, IFRS 17에 따라 기업은 최초 인식 시점에 손실을 즉시 당기 손익으로 인식해야 하는 반면, 재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순원가(Net cost)나 순차익(Net gain)은 재보험 보장을 받는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보유한 재보험계약을 통해 원수 보험계약의 손실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즉시 인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IASB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원수보험계약의 손실을 최초 인식 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경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재보험계약에서 수익을 인식하도록 기준서 개정을 제안하였다.

- 재보험계약이 원수보험계약 청구금액의 일정 비율을 보장함(즉, 청구금액의 고정 비율이 회수됨)
- 재보험계약은 발행한 원수보험계약과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체결됨

인식하는 수익은 원수보험계약에서 인식된 손실과 재보험계약으로부터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고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다.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발행 보험계약		발행 보험계약	
프리미엄	100	프리미엄	100
청구금액	(150)	청구금액	(150)
기대 손실(즉시 인식)		기대 손실(즉시 인식)	
	(50)		(50)

보유 재보험계약		보유 재보험계약	
재보험계약 프리미엄	(125)	재보험계약 프리미엄	(125)
재보험계약에서 보장되는 청구금액 (청구금액의 80%를 보전)	120	재보험계약에서 보장되는 청구금액	120
		- 손실의 보전 (50×80%=40)	40
		- 잔여 청구금액	80
순원가(기간에 걸쳐 인식)		순원가	
	(5)	- 수익(즉시 인식)	40
		- 수정된 순원가(기간에 걸쳐 인식)	(45)

(7) 재무상태표 표시의 단순화

IFRS 17은 자산이 생기는 보험계약집합을 부채가 생기는 보험계약집합과 별도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보험계약집합의 순현금흐름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가 생기는데, 각 보험계약 집합의 순현금흐름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집합 수준에서 현금관리시스템, 계리 시스템 등 독립적인 시스템들의 통합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단지 재무상태표 상 표시를 위해서 시스템 통합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

IASB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계약집합이 아니라 보험계약 포트폴리오² 별로 보험계약 자산과 보험계약부채를 별도로 표시하도록 기준서 개정을 제안하였다.

2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는 집합으로 나뉘므로, 일반적으로 집합보다 포트폴리오가 큰 단위이다.

(8) 추가 경과 규정

IASB는 IFRS 17의 경과규정이 적용하기에 비용이 많이 들고 부담스럽다는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의 개정사항을 제안하였다.

a. 사업 결합

사업 결합으로 취득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 취득 전에 발생한 보험청구금액의 결제 의무를 발생사고부채로 분류하도록 요구함

b. 전환일부터 위험경감선택권 적용

위험경감선택권을 IFRS 17의 최초 적용일이 아닌 전환일 이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허용함. 다만 위험경감선택권을 적용한 날이나 그 전에 위험경감관계를 지정하여야 함

c. 위험경감선택권과 공정가치 접근법

IFRS 17을 소급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업도 위험경감선택권과 관련하여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직접참가 특성이 있는 보험계약 집합에 공정가치 접근법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함

- i. 해당 보험계약집합에 전환일로부터 위험경감선택권을 적용하기로 선택
- ii. 기업이 전환일 이전에 이미 해당 보험계약집합에서 생기는 금융위험을 줄이기 위해 파생상품이나 재보험계약을 사용

(9) 기타

IASB는 기타사항으로 다음 사항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a. 보험계약부채의 기초~기말 장부금액의 조정내용에서 투자 요소와 프리미엄의 환급을 별도로 공시할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함

b.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의 현금흐름에서 발생하는 변동은 보험 수익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함



IASB 주요 프로젝트 진행 현황

IASB가 2019년 6월말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의 진행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현재상황	진행계획	
		6개월 내	6개월 이후
공개초안			
요율규제활동	분석 중		토론서 또는 공개초안 발행
공시개선 - 회계원칙	분석 중	토론서 또는 공개초안 발행	
보험계약 개정	분석 중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토론서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	분석 중		토론서 발행
동적 위험관리	분석 중	주요 모형 발표	
영업권과 손상	분석 중	토론서 발행	
자본의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	분석 중	프로젝트의 방향 결정	

위의 주요 프로젝트 중 IASB의 5, 6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영업권과 손상

IASB는 ① 사업결합에 대한 공시개선 ② 영업권 상각 재도입 ③ 매년 요구되는 영업권 손상검사 의무의 완화 ④ 사용가치 산정방식의 개선이라는 4개의 목적을 가지고 영업권과 손상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2019년 5월 회의에서는 그 중 ①과 ③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2019년 6월 회의에서는 2019년 하반기 중 발표 예정인 토론서에 포함시킬 사전적 견해 (preliminary views)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결합에 대한 공시 개선

✓ IASB는 아래 사항을 제안하였다.

-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사업의 후속성과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IFRS 3 '사업결합'의 공시목적 개선
- 사업결합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정보의 공시를 요구
- 아래 정보의 공시를 요구
 - 기대되는 시너지의 금액 또는 금액의 범위
 - 재무활동 또는 인수된 연금부채(pension liabilities)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부채

· 취득일 이후 피취득자의 수익, 영업손익 (취득 관련 거래원가 및 통합원가 반영 전) 및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

- ✓ IASB는 IFRS 8 '영업부문'에서 규정하는 최고경영의사결정자가 사업결합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 ✓ IASB는 해당 연도에 발생한 모든 사업결합에 대하여 그 취득일이 연차 보고기간의 개시일 현재 라고 가정할 경우에 해당 보고기간 중 결합기업의 수익과 당기손익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IFRS 3 문단 B64(q)(ii)를 취득자가 취득일 이후 피취득자의 수익, 영업손익 및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지 않기로 하였다. 왜냐하면, 보고기간 말에 근접하여 발생한 사업결합이나 유의한 계절성(significant seasonality)을 가진 사업결합의 경우, 정보이용자가 그러한 사업결합이 보고기간 전체에 미치는 영향(full-year effect)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결합이 기초에 발생하였다면 인식되었을 손익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US GAAP에서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업권 상각 재도입

IASB는 영업권의 후속측정 방법에 대하여 현행 모형인 손상 모형과 제안된 의견인 상각 모형 두가지 모두를 토론서에 기술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영업권 반영 전 총자본 소계의 표시

IASB는 재무상태표에 영업권 반영 전 총자본 소계를 표시하도록 요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매년 요구되는 영업권 손상검사 의무 완화

IASB는 영업권에 손상징후가 없는 경우와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이나 아직 사용하지 않는 무형자산에 대하여 매년 양적 손상검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삭제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사용가치 - 미래 구조조정 및 성능 향상으로부터 기대되는 현금흐름

- ✓ IASB는 미래 구조조정이나 성능향상으로부터 기대되는 현금흐름을 반영하지 않도록 한 IAS 36의 현행 요구사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 ✓ IASB는 미래 구조조정 및 성능 향상으로부터 기대되는 현금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임계치 (threshold)로서 'more likely than not(발생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은)'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 ✓ IASB는 아직 확약하지 않은 미래 구조조정이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성능향상에 대한 질적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사용가치 - 세후 투입변수의 사용

- ✓ IASB는 아래 사항을 제안하였다.
 - 사용가치 산정시 세전 투입변수와 세전 할인율을 사용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삭제
 - 현금흐름과 할인율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일관된 가정(internally consistent assumptions)을 사용할 것과 사용가치 추정에 사용된 할인율을 공시할 것을 요구



I. 2019년 5월과 6월 IASB meeting 기타 논의사항

IASB의 주요 프로젝트 외에 2019년 5월과 6월의 IASB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AS 16] 유형자산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IASB는 2017년 6월에 유형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재화의 매각금액과 원가를 적용가능한 기준서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IAS 16의 문단 17(5)3를 개정하는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IFRS Brief 2017년 9·10월호 참고)

IASB는 이번 회의에서 공개초안을 마무리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잠정적으로 결정하였다.

- ✓ 유형자산이 사용가능한 상태가 되기 이전에 생산된 품목의 원가를 재고자산 측정 요구사항인 IAS 2 문단 9~33을 적용하여 식별하고 측정하도록 IAS 16을 수정함
- ✓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일부인 항목의 판매는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긴 수익'과 IAS 2 '재고자산'이 적용되므로 이에 대한 표시 또는 공시 요구사항을 별도로 개발하지 않음
- ✓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일부가 아닌 항목의 판매에 대해서는 IFRS 15와 IAS 2를 적용하지 않고, 다음의 요구사항을 적용함
 - 매각대금과 손익으로 인식된 관련 생산 원가를 개별적으로 공시함
 - 매각대금과 생산원가를 포함하는 기타포괄손익과 손익계산서의 개별항목을 명시

3 IAS 16. 17(5)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단, 시험생산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예: 장비의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의 순매각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차감한다

II. 2019년 6월 IFRIC meeting 주요내용 요약

2019년 6월의 IFRS 해석위원회에서 논의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FRS IC Tentative Agenda decisions

2019년 6월 해석위원회에서 결정한 Tentative agenda decision은 다음과 같다.

(1) [IFRS 9] 비금융자산의 외화위험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

해석위원회는 IFRS 9의 공정가치위험회피와 관련하여 소비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비금융자산의 외화위험을 별도로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이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IFRS 9에 따르면 특정 시장 구조에 근거하여 평가하였을 때, 위험요소를 별도로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위험요소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익스포저를 관리하는 회사의 위험관리 목적 및 전략과 일관되어야 한다. 또한 IFRS 9 문단 6.5.2(a)에서 공정가치위험회피는 '특정 위험에 기인하고 당기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인식되지 않은 확정계약 또는 이러한 항목의 구성 요소의 공정가치 변동 익스포저에 대한 위험회피'로 정의하고 있다.

해석위원회는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외화로 결정된다면 IAS 21 '환율변동효과'를 적용하였을 때 회사의 기능통화로 환산된 공정가치 측정치는 외화위험에 노출되어 당기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소비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비금융자산의 경우 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가 종료되기 이전에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특정 시장구조에 근거하여 평가하였을 때, 공정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특정 통화로만 결정되고 그 통화가 회사의 기능통화가 아니라서 그 공정가치를 회사의 기능통화로 환산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정가치 변동과 관련되는 위험을 헤지하는 경우, 해당 외화위험은 별도로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해석위원회는 회사가 비금융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소비할 의도라면, 그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회사에 중요하지 않아서 회사가 비금융자산의 익스포저를 관리하거나 헤지하지 않을 것이므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IFRS 9에서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기준서 제정 안건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였다.



(2)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항공기의 지연 또는 운항 취소로 인한 보상금

해석위원회는 항공사가 항공기의 지연 또는 운항 취소로 인하여 고객에게 보상해야 하는 의무에 대하여 IFRS 15의 변동대가 규정⁴을 적용해야 할지 IFRS 15 문단 B335에 따라 고객에게 이전하는 수행의무와 별도로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적용해야 할지 질문을 받았으며 제시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 고객(승객)은 특정 조건에서 항공기의 지연 또는 운항 취소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상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률 조항에 정해져 있는 보상금은 고객이 항공사에 지급한 금액과 관련되어 있지 않음
- ✓ 법률은 기업에게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며 기업과 고객 간의 계약 조항의 일부를 구성함
- ✓ 고객과의 계약은 IFRS 15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며, 기업은 고객에게 항공운역을 이전하는 약속 자체를 수행의무로 식별함

제시된 현황에서 기업의 약속은 고객에게 특정한 시간 내에 특정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며, 고객은 기업이 이 약속의 이행을 실패하는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보상금은 IFRS 15 문단 B335에서 언급하는 제품의 피해나 손해로 인한 보상금이라기 보다는 수행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지체상금과 같은 변동대가를 유발하는 위약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변동대가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해석위원회는 항공기의 지연 또는 운항취소로 인한 보상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IFRS 15에서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기준서 제정 안건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였다.

(3) [IFRS 16] 리스 -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

리스료는 일반적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원금 분할상환 차입금(amortizing loan)과 상환구조가 비슷하고, 원금 분할상환 차입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원금 일시상환 차입금(bullet repayment loan)보다 이자율이 낮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석위원회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 산정 시, 리스기간과 비슷한 만기, 리스료 지급 구조와 비슷한 상환구조를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4 IFRS 15 문단 47에서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는 고정금액, 변동금액 또는 둘 다를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IFRS 15 문단 51에서는 변동대가의 예시로 할인(discount), 리베이트, 환불, 공제(credit),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 장려금(incentives), 성과보너스, 위약금이나 그 밖의 비슷한 항목으로 언급하고 있다. IFRS 15는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대가가 변동대가에 해당한다면 IFRS 15 문단 50에서 54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제품이 손해나 피해를 끼치는 경우에 기업이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법률 때문에 수행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제조업자는 소비자가 용도에 맞게 제품을 사용하면서 생길 수 있는 모든 피해(예: 개인 자산에 대한 피해)를 제조업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률이 있는 국가(법적 관할구역)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제품이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그밖의 권리를 침해한 데 따른 청구로 생기는 책임과 피해에 대해 고객에게 배상하기로 한 기업의 약속 때문에 수행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 이러한 의무는 기업회계 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IFRS 16 용어의 정의에서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로 정의하고 있고, IFRS 16 문단 BC162에서는 기초자산의 특성과 리스의 조건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할 때 쉽게 관측할 수 있는 이자율을 시작점으로 참조할 수 있으며, 관측 가능한 이자율을 조정하여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해석위원회는 IFRS 16에서 증분차입이자율에 리스료의 지급 구조를 반영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지만, 리스이용자는 리스와 비슷한 상황 구조를 가지는 차입금의 '쉽게 관측할 수 있는 이자율'을 시작점으로 하여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IFRS 16에서 증분차입이자율 산정을 위한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이슈를 기준서 제정 안건에 포함하지 않기로 잠정적으로 결론 내렸다.

(4) [IAS 16] 리스 - 리스기간과 리스개량자산의 내용연수

해석위원회는 해지가능리스 및 갱신가능리스에 대하여 리스기간 및 리스개량자산의 내용연수에 관한 이슈를 논의하였다.

- ✓ 해지가능리스 : 거래 상대방 중 한 당사자가 계약을 종료할 때까지 계약이 계속 유지됨(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음). 해지 통보 시점부터 12개월(예고기간) 이내에 리스가 종료됨
- ✓ 갱신가능리스 : 계약상 최초기간이 정해져 있고, 최초기간 후에 일방이 해지하지 않으면 주기적으로 자동 연장됨

① 리스기간 산정 시 리스의 집행 가능한 기간은?

리스기간은 해지불능기간과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 기간,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는 그 선택권의 대상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해석위원회는 IFRS 16 문단 B346를 고려하여 리스의 집행 가능한 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 계약상 명시된 위약금분만 아니라 계약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불이익(penalty)을 평가해야 함. 예를 들어, 계약 당사자 중 일방에게 리스를 종료하지 않을 경제적인 유인이 있다면(계약 종료 시 불이익(penalty) 발생), 계약상 종료 가능한 시점을 넘어서서 계약이 집행 가능함
- ✓ B34에 따라 '약간의 불이익만 감수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리스를 종료할 권리'가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 양방에 있는 경우에만 리스는 더 이상 집행 가능하지 않음. 따라서, 그러한 종료권이 한 당사자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시점을 넘어서서 리스는 집행 가능함

6 리스기간을 산정하고 리스의 해지불능기간의 길이를 평가할 때, 계약의 정의를 적용하여 계약이 집행 가능한(enforceable) 기간을 산정한다. 약간의 금액을 부담하면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리스를 종료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 그 리스는 더는 집행할 수 없다.

회사가 해지가능리스의 예고기간이나 갱신가능리스의 최초기간을 넘어서서 계약이 집행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를 평가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한다.

② 제거할 수 없는 리스개량자산의 내용연수는?

제거할 수 없는 리스개량자산은 IAS 16 '유형자산' 기준서 문단 50에 따라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해야 하는데, 내용연수를 결정할 때 IAS 16 문단 56(4)와 57을 적용한다.

리스기간이 리스개량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짧은 경우, 리스개량자산을 리스기간 이후에도 사용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리스기간 이후에 사용할 계획이 아니라면 문단 56(4)와 문단 57을 적용하여 리스개량자산의 내용연수와 리스기간이 동일할 수 있다.

③ 리스개량자산의 내용연수와 리스의 집행 가능한 기간의 상관 관계는?

IFRS 16 문단 B37에서는 리스이용자가 리스를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확실한지 평가할 때, 선택권 행사와 관련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사실과 상황을 모두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특히 IFRS 16 문단 B37(2)에서는 연장선택권의 행사나 종료선택권의 미행사의 경우에 리스이용자에게 유의적인 경제적 효익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유의적인 리스개량을 고려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리스개량자산을 포기하거나 해체하는데 드는 원가는 리스 종료 시 경제적 불이익(penalty)를 발생시키므로, 리스의 집행 가능한 기간을 연장시키고 리스를 연장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IFRS 16 문단 B34를 적용하여 리스개량자산의 예상되는 사용기간 동안은 적어도 계약이 집행 가능한 것은 아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석위원회는 IFRS 16 및 IAS 16에서 해지가능리스 및 갱신가능리스의 리스기간과 리스개량자산의 내용연수 산정을 위한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이슈를 기준서 제정 안건에 포함하지 않기로 잠정적으로 결론 내렸다.



7 IAS 16.56(4) 유형자산 내용연수 결정 시 고려할 사항으로 관련 리스 종료일 등이 있음. IAS 16.57 유형 자산 내용연수는 자산에서 기대되는 효용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짧을 수 있음

(5) [IAS 1] 재무제표 표시 -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과 관련된 부채(자산)의 표시

해석위원회는 IFRIC 23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한 자산과 부채의 표시를 재무상태표에 당기법인세부채(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자산)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총당부채와 같은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질문을 받았다.

법인세 관련 기준서인 IAS 12 '법인세'와 IFRIC 23 '법인세처리의 불확실성'은 불확실성이 있는 법인세 부채(자산)의 표시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IAS 1 '재무제표 표시'를 적용해야 하며, IAS 1 '재무제표 표시' 문단 54(14), (15)은 IAS 12 '법인세'에서 정의된 당기법인세와 관련한 부채(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자산)은 다른 부채(자산)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해석위원회는 IFRIC 23에 문단 4에서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 이 해석서에 따라 산정된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세무기준액, 미사용결손금, 미사용 세액공제, 세율을 기초로 IAS 12 '법인세'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당기 및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인식하고 측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IFRIC 23을 적용하여 인식된 불확실성이 있는 법인세부채(자산)은 IAS 12에서 정의된 당기법인세 또는 이연법인세 정의를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불확실성이 있는 법인세부채(자산)은 당기법인세부채(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자산)으로 표시해야 하고, 재무상태를 이해하기에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불확실성이 있는 법인세부채(자산)을 다른 법인세부채(자산)과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석위원회는 불확실성이 있는 법인세부채(자산)에 대한 표시 방법은 현행기준에서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기준서 제정 안건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였다.

(6) [IAS 41] 생물자산 - 생물자산에 관련된 후속지출

해석위원회는 IAS 41 '생물자산'을 적용하여 순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생물자산의 후속지출과 관련된 원가를 자본화 해야 하는지(즉, 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해야 하는지) 또는 발생시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해석위원회는 후속지출을 자본화할지 또는 비용으로 인식할 지가 생물자산의 측정과 손익에는 영향이 없으나, 손익계산서상 금액의 표시에 영향이 있다고 보았다.

IAS 41 문단 B62에서 'IAS 41은 생물자산에 관련된 후속지출에 관한 회계처리를 규정하는 것이 공정가치측정접근법에 있어서는 불필요 하므로 후속지출에 관련된 회계처리를 명시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해석위원회는 IAS 41을 적용하여 기업은 후속지출을 자본화하거나 발생 시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의 문단 13에 따라 기업은 생물자산의 각 범주에 대하여 선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하며, 그러한 거래가 보고된 재무성과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IAS 1 '재무제표 표시'의 문단 117-124에 따라 기업이 선택한 회계정책을 공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해석위원회는 이 시점에서 생물자산의 후속지출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한 기준서 제정하는 것이 과도한 비용부담에 비해 재무보고를 개선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증거를 얻지 못했으므로 이 이슈를 기준서 제정 안건에 포함하지 않기로 잠정적으로 결론 내렸다.

2. IFRS IC Agenda decisions

2019년 6월 해석위원회에서 결정한 Agenda decision은 다음과 같다.

(1) 가상화폐의 보유 회계처리⁸

해석위원회는 가상화폐를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다면, IAS 2 '재고자산'을 적용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가상화폐의 보유에 IAS 2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IAS 38 '무형자산'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기업은 가상화폐의 보유에 적용되는 IFRS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을 적용한다. 따라서, 재고자산인지, 무형자산인지를 판단하여 해당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을 적용하고, 기업이 가상화폐의 보유를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IFRS 13 '공정가치 측정'의 공시요구사항을 적용한다.

또한, 해석위원회는 IAS 1 문단122에 따라 가상화폐의 보유에 대한 회계처리가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경영진이 내린 판단에 해당한다면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IAS 10 문단21에 따라 사건의 성격과 사건의 재무적 영향에 대한 추정치를 포함한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의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면, 보고기간 후 발생한 가상화폐의 공정가치 변동을 공시하지 않는다면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2)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계약이행원가⁸

해석위원회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는 계약에서, 이미 이행한 과거 수행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원가를 자산화할 수 있는지 논의하였다.

해석위원회는 과거 수행의무와 관련된 원가는 미래의 수행의무를 이행(또는 계속 이행)할 때 사용할 기업의 자원을 창출하거나 가치를 높이는 원가가 아니므로 자산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석위원회는 IFRS 15의 원칙과 요구사항이 질의에서 제시된 사실관계에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원가를 인식하는 방법에 대하여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기준서 제정 안건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3) [IFRS 16] 리스 - 지하권(subsurface rights) 등의 회계처리⁸

해석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지하권 계약에 IFRS 16 '리스'를 적용해야 하는지, IAS 38 '무형자산'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기준서를 적용해야 하는지를 논의하였다.

8 IFRS Brief 2019년 5·6월호 참고

- ✓ 고객(송유관 회사)은 일정대가를 지급하고 토지 지하에 20년간 송유관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계약을 토지 소유주와 체결함
- ✓ 계약 상 송유관이 설치되는 정확한 위치와 공간(방향, 폭 및 깊이)이 구체적으로 명시됨
- ✓ 계약기간 동안 토지 소유주는 송유관이 설치되는 토지 표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만, 송유관이 설치되는 지하공간에 접근하거나 사용방법을 변경할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못함
- ✓ 고객은 송유관에 대한 조사, 수리 및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필요한 경우 파손된 송유관을 대체할 수 있음)

해석위원회는 IFRS 16에서 정의하고 있는 리스가 질의한 계약에 포함되어 있고, 고객은 해당 리스에 대해 IFRS 16을 적용하여 회계 처리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계약 상 명시된 지하공간은 토지의 다른 부분과 물리적으로 구분되고, 토지 소유주에게 사용기간 동안 지하공간을 대체할 권리가 없으므로, 명시된 지하공간은 식별되는 자산이고, 고객이 20년의 사용기간 내내 명시된 지하공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계약 상 명시된 지하공간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에 관련되는 결정이 미리 내려졌으며, 고객이 지하공간을 운용할 권리를 가지고 토지의 소유주가 그 운용지시를 바꿀 권리가 없으므로 명시된 지하공간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IFRS 기준서가 질의를 받은 계약의 회계처리를 위한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이슈를 기준서 제정 안건에 포함하지 않기로 잠정적으로 결론 내렸다.

(4) [IAS 19] 종업원 급여 - 기여금에 대한 잠재적 할인이 제도의 분류에 미치는 영향⁸

해석위원회는 회사가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매년 고정 기여금을 제3자에게 납부해야 하지만, 사전에 정해 놓은 제도부채 대비 제도자산의 특정 비율을 초과하면 납부해야 하는 기여금을 할인 받을 수 있는 경우(기여금에 대한 잠재적인 할인이 존재하는 경우)에 회사가 운영하는 퇴직급여제도가 확정급여제도인지 확정기여제도인지에 대해 논의 하였다.

해석위원회는 IAS 19 문단 BC29에서 확정기여제도의 정의가 기업에 대한 비용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는 잠재력을 배제하지 않으므로 IAS 19를 적용할 때 잠재적인 할인의 존재 자체만으로는 퇴직급여제도를 확정급여제도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위원회는 제도의 분류와 관련하여 제도의 모든 관련 조항 및 조건뿐만 아니라 의제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비공식적인 관행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해석위원회는 IAS 19의 요구사항이 퇴직급여제도의 분류를 결정하기 위한 적절한 근거를 제공한다고 결론 내리고, 이 문제를 기준서 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8 IFRS Brief 2019년 5·6월호 참고

IFRS 실무적용해설

〈실무적용이슈 No.69〉



전환사채와 전환상환우선주 발행자의 법인세 효과 비교

법인세법 상 전환사채는 발행금액 전체가 부채⁹로 분류되고, 전환상환우선주는 발행금액 전체가 자본¹⁰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K-IFRS 1032에 따르면 전환사채와 전환상환우선주는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등의 계약상 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해당 상품을 자본이나 부채로 분류한다. 따라서 전환사채와 전환상환우선주에 대한 법인세법과 회계기준에 따른 분류가 서로 다른 경우에 재무제표상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에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상기 설명과 같이 법인세법상 전환사채는 부채로 분류되고, 전환상환우선주는 자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각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이하 “법인세효과”)이 다르다. 이번 실무적용해설에서는 전환사채와 전환상환우선주에 대한 서로 다른 법인세효과와 이와 관련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에 대해 알아본다.

일시적차이와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미래 회계기간에 납부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법인세 금액이고, 일시적차이는 자산과 부채의 세무기준액과 재무제표상 장부금액의 차이이다. 이러한 일시적차이는 해당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금액이 회수되거나 결제되는 미래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 결손금) 결정시 가산되거나 차감된다. 즉, 일시적차이가 발생한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금액이 회수되거나 결제되는 미래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결정 시에 가산되거나 차감됨에 따른 법인세금액 변동액이 이연법인세이다.

따라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재무제표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금액이 해당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금액이 회수되거나 결제되는 미래 회계기간에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결정 시 가산되거나 차감되지 않는다면 해당 자산이나 부채에 일시적차이는 없는 것이고 해당 차이금액은 이연법인세 인식 대상이 아니다.

9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

10 질의회신 법인,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242 [법령해석과-3271], 2018.12.14

전환사채

법인세법 상 전환사채의 발행금액이 부채로 분류된다. 만일 전환사채의 전환권이 K-IFRS 1032에 따른 자본의 요건을 충족하여 전환권을 자본으로 인식하게 되면 전환사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에 차이가 발생한다. 해당 차이금액은 전환사채의 기대만기동안 상각되어 이자비용으로 인식되지만, 세무상으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에 따른 이자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전환사채의 최초 인식 시 전환권에 대한 일시적차이는 이자비용 상각기간동안 소멸하게 된다.

[사례 1] 전환사채

A사는 액면금액 20,000원인 전환사채를 액면발행 하였다. 전환사채의 발행일에 전환권이 없는 일반사채(다른 조건은 전환사채와 동일)의 공정가치는 18,000원이다. 전환사채 권면 10,000원당 보통주 1주를 발행하는 조건이고 전환비율의 재조정 조건은 없으므로 전환권은 K-IFRS 1032에 따른 자본의 요건을 충족한다. A사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20%이다.

<분석>

	회계처리		세무상 회계처리	
	차변	대변	차변	대변
(1) 발행	현금 20,000	부채 18,000 자본(전환권) 2,000	현금 20,000	부채 20,000
	이연법인세부채(DTL)의 인식			
	자본 400	DTL 400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에 차이가 발생함. 이 차이는 회계상 이자비용으로 상각되거나 해당 부채의 상환 및 전환에 따라 부채가 제거되면서 손실로 인식됨. 그러나 법인세법상 해당 이자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인세효과가 발생하므로 일시적차이가 발생함. K-IFRS 1012 문단 23에 따라 이연법인세비용을 자본에 반영함			
(2) 이자비용 (전환권) 상각	이자비용 2,000	부채 2,000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에 따른 이자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세무상 회계처리 없음
	이연법인세부채(DTL)의 변동 인식			
	DTL 400	이연법인세 수익 400		
	발행시점의 가산할 일시적차이(2,000)가 이자비용 상각 시 모두 추인 되었으므로 이연법인세부채가 변동함.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을 K-IFRS 1012 문단 23에 따라 당기손익에 인식함			

(3-1) 만기 전환	부채	20,000	자본	20,000	부채	20,000	자본	20,000
(3-1) 만기 상환	부채	20,000	현금	20,000	부채	20,000	현금	20,000

[참고] 전환사채에 대한 각 시점의 세무조정

		세무조정			
(1)발행 시	손금산입	부채	2,000	△유보	
	익금산입	자본	2,000	기타	
(2)상각 시	손금불산입	부채(이자비용)	2,000	유보	
(3)만기	발행시에 발생한 유보(2,000)가 이자비용 상각 시 모두 추인되었으므로 만기에 전환되거나 상환되는 시점에는 별도의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음				

전환상환우선주

법인세법 상 전환상환우선주의 발행금액은 자본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전환상환우선주의 계약 상 발행자에게 상환의무가 있거나 변동가능한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발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 K-IFRS 1032에 따라 부채로 분류된다. 이러한 경우에 전환상환우선주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에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나 전환상환우선주의 발행과 이자지급, 전환 및 상환 등의 거래는 법인세법상 자본거래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전환상환우선주와 관련한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는 과세 소득에 가산되거나 차감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환상환우선주에는 일시적차이가 없다.

[사례 2] 전환권이 자본요소인 전환상환우선주

B사는 액면금액 20,000원인 전환상환우선주를 액면발행 하였다. 발행일로부터 3년후에 투자자는 B사에 상환청구를 하거나 보통주로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전환상환우선주의 발행일에 전환권이 없는 만기가 3년인 일반사채(다른 조건은 전환사채와 동일)의 공정 가치는 18,000원이다. 전환상환우선주 권면 10,000원당 보통주 1주를 발행하는 조건 이고 전환비용의 재조정 조건은 없으므로 전환권은 K-IFRS 1032에 따른 자본의 정의를 충족한다. B사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20%이다.

<분석>

B사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는 투자자에게 상환청구권이 있으므로 부채의 성격인 상환 우선주가 주계약이고, 전환권은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는 내재파생상품으로 분리하여 회계처리 한다.

	회계처리		세무상 회계처리	
	차변	대변	차변	대변
(1) 발행	현금 20,000	부채 18,000 자본(전환권) 2,000	현금 20,000	자본 20,000
	<i>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없음</i>			
	전환상환우선주 발행 시에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에 차이 (18,000)가 발생하지만, 세무상 전환상환우선주는 자본이므로 전환상환우선주의 전환 또는 상환은 세무상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이 차이금액이 과세소득에 가산되거나 차감되지 않음. 즉, 과세되거나 공제되는 세효과가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부채에 대한 일시적차이는 없으므로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지 않음			
(2) 이자비용 (전환권) 상각	이자비용 2,000	부채 2,000	전환상환우선주는	세무상 자본 이므로 이자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i>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없음</i>			
	세무상 전환상환우선주는 자본이므로 전환상환우선주의 이자비용 상각액은 이자비용 인식시점에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전환상환우선주의 상환이나 전환 등, 이후에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이자비용은 일시적차이가 아님. 따라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대상이 아님			
(3-1) 만기 전환	부채 20,000	자본 20,000	세무상 회계처리 없음	
(3-1) 만기 상환	부채 20,000	현금 20,000	자본 20,000	현금 20,000

[참고] 전환상환우선주에 대한 각 시점 별 세무조정

	세무조정			
	(1)발행 시	익금산입	부채	18,000
	손금산입	자본	18,000	기타
(2)상각 시	손금불산입	부채(이자비용)	2,000	유보
(3) 만기 전환/ 상환 시	손금산입	부채	20,000	△유보
	익금산입	자본	20,000	기타

KPMG contacts

KPMG 삼정회계법인
Department of Professional Practice / IFRS COE

DPP

현승임 상무

T. (02)2112-0528
E. shyun@kr.kpmg.com

박은숙 상무

T. (02)2112-0673
E. eunsukpark@kr.kpmg.com

한상현 이사

T. (02)2112-7072
E. shan1@kr.kpmg.com

김응주 S.Manager

T. (02)2112-3227
E. eungjookim@kr.kpmg.com

이승훈 S.Manager

T. (02)2112-7874
E. seunghoonlee@kr.kpmg.com

양유정 S.Manager

T. (02)2112-6940
E. youjeongyang@kr.kpmg.com

국민경 Manager

T. (02)2112-6601
E. mkook1@kr.kpmg.com

이예슬 Manager

T. (02)2112-3144
E. yaeseullee@kr.kpmg.com

지가현 Manager

T. (02)2112-2733
E. gahyunji@kr.kpmg.com

오소라 Manager

T. (02)2112-6581
E. soraoh@kr.kpmg.com

kpmg.com/kr

© 2019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